

대구사이버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제 9 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15. 04. 16. 10:30

2. 장 소 :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실

3. 출결사항

구분	인원	성명
참석	6명	최계호위원장, 김한양부위원장, 전종국위원, 이기동위원, 황금천위원, 정영수위원
불참	3명	김춘희위원, 유은숙위원, 구경희위원

4. 안 건

- 가. 위원장, 부위원장 선임 및 회의제반사항 결정
- 나. 2015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요청 심의
- 다. 잉여금 처리 원칙(안) 심의
- 라. 2014학년도 학교비 회계 결산(안) 심의




5. 회의내용

가.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

간사가 재적위원 참석여부 확인과 함께 위원회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한 후, 위원장에게 개회선언을 확인하다.

나. 안건 1 : < ‘위원장, 부위원장 선임 및 회의제반사항 결정’ >

- 임 시 위 원 장 : 위 안건을 상정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기능과 구성위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.
- 간 사 : 등록금심의위원회 목적과 기능에 대해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.

간서명	위원		위원		위원	
-----	----	---	----	--	----	---

●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배경

① 대학 예산편성 및 결산시 학내 구성원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

- 대학평의위원회는 예결산시 자문기구로서의 기능 담당

② 시설비 등 학생부담 가중 경비의 경우 예산편성시 학내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미흡

→ 예·결산 심의에 관한 「사립학교법」 개정(2013.1.23.)

: 내부통제 기능 강화로 등록금회계의 투명성 제고

제 29조(회계의 구분)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·집행한다. <개정 2005.12.29, 2013.1.23>

1. 대학교육기관: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"등록금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사·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·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.

●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

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(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)

-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(제2항)

- 위원회는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(제3항)

· 교직원(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)

· 학생

· 관련 전문가(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)

· 학부모 또는 동문포함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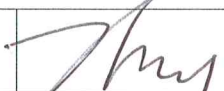


② 구성 단위별 인원 수 제한

-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(제4항)

-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됨(제4항)

- 학생 위원은 전체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함(제4항)

- 황금천 위원 : 임시 위원장인 최계호 위원을 위원장, 기획조정실장 김한양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다.
- 참석위원 전원 : 임시위원장인 최계호 위원을 위원장, 기획조정실장 김한양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전원 동의하다.
- 최계호 위원 : 간서명인에 김한양 부위원장, 전종국 위원, 정영수 위원을 추천하다.
- 참석위원 전원 : 간서명인에 김한양 부위원장, 전종국 위원, 정영수 위원에 전원 동의하다.

간서명	위원		위원		위원	
-----	----	---	----	--	----	---

다. 안건 2 : < ‘2015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요청 심의’ >

- 위 원 장 : 위 안건을 상정한 후,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.
- 간 사 :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< ‘2015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요청 심의’ >에 관련된 사항을 상세 설명하다.

1. 관련 법조항 :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 47조 제1항 및 제2항

-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. 다만,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[개정 2012.1.26]
- ② 「사립학교법」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제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. [신설 2012.1.26, 2013.3.23 제11690호(정부조직법)]

2. 사학연금 부담금 : 교직원이 재직하는 최장 33년 동안 개인부담금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0/1,000을 매월 납부하고 별도로 학교기관 또는 국가가 나머지 기준소득월액의 70/1,000을 매월 납입

3. 부담률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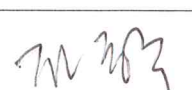

구분	부담율		부담자
	교원(14%)	사무직원(14%)	
개인부담금	기준소득월액의 7%	기준소득월액의 7%	교직원 부담
법인부담금	개인부담금의 4.117%	기준소득월액의 7%	학교기관
국가부담금	개인부담금의 2.883%	없음	국가

4. 2015학년도 학교비회계 사학연금 학교부담 예산현황

(단위 : 원)

구분	예산항목	예산	예산총액
교원	사학연금	110,186,000	245,313,000
	사학연금재해보상	7,504,000	
직원	사학연금	122,083,000	
	사학연금재해보상	5,540,000	

- 김한양 부 위원 장 : 우리 대학의 법인현황과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 법인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다.

간서명	위원		위원		위원	
-----	----	---	----	--	----	---

- 정영수 위원 :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만족도도 중요하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직원의 만족도도 중요하니 어쩔 수 없는 법인의 상황은 이해가 되어 위 안건의 승인 요청에 동의하다.
- 참석위원 전원 : 각 위원이 관련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검토한 후 상정 안건에 대해 전원 찬성 의결하다.
- 위 원 장 : 참석위원 전원의 「2015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요청 심의」에 찬성 의결을 확인하고 심의를 종결하다.

라. 안건 3 : < ‘잉여금 처리 원칙(안) 심의’ >

- 위 원 장 : 위 안건을 상정한 후,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.
- 간 사 :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< ‘잉여금 처리 원칙(안) 심의’ >에 관련된 사항을 상세 설명하다.

1. 관련 법조항 : 「사립학교법」 제32조의 3 제1항 내지 제2항

제32조의3(이월금)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·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>

[본조신설 2013.1.23.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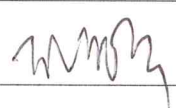

2. 잉여금

2014학년도 결산상 차기이월자금(A)	2015학년도 본예산 상 전기이월자금(B)	잉여금(C)=(A)-(B)
2,745,983,200	962,995,000	1,782,988,200

- 간 사 : 아래와 같이 대구사이버대학교의 ‘잉여금 처리 원칙(안)’을 설명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하다.

【잉여금 처리 원칙(안)】

○ 등록금 회계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대학이 추진하는 중요사업 중 학생복지 향상과 관련된 학생지원사업 및 장학금 확대 등의 재원으로 우선하여 사용하며,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총장의 결제를 득한다.

간서명	위원		위원		위원	
-----	----	---	----	--	----	---

- 참석위원 전원 : 각 위원이 상정 안건에 대해 상호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, 대구사이버대학교 ‘잉여금 처리 원칙(안)’ 이 타당하다는 의결에 합의하다.
- 정영수 위원 : ‘ 잉여금 처리 원칙(안)’ 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하다.
- 황금천 위원 : 재청하다.
- 참석위원 전원 : 찬성하다.
- 위 원 장 :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‘잉여금 처리 원칙(안)’ 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.

라. 안건 4 : < ‘2014학년도 학교비 회계 결산(안) 심의’ >

- 위 원 장 : 위 안건을 상정한 후,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.
- 간 사 :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< ‘2014학년도 학교비 회계 결산(안) 심의’ >에 관련된 사항을 자금계산서 총괄, 수입부, 지출부 등의 순서로 상세 설명하다.

1. 자금계산서 총괄표
가. 총괄




(단위:원)

예 산 액	결 산 액	증 감(△)	비 고
17,568,744,000	17,569,608,625	864,625	

나. 수입부

(단위:원)

관별	등록금회계	비등록금회계	교비회계 자금계산서		
			결산액	예산액	증감(△)
등록금 수입	9,579,353,974	281,270,000	9,860,623,974	9,570,370,000	290,253,974
전입 및 기부수입	0	2,235,035,250	2,235,035,250	2,497,300,000	△262,264,750
교육부대수입	0	170,346,130	170,346,130	195,939,000	△25,592,870
교육외수입	121,519,102	428,778,600	550,297,702	551,825,000	△1,527,298
투자외 기타자산 수입	0	0	0	3,000	△3,000
고정자산매각수입	0	0	0	1,000	△1,000
미사용전기이월자금	1,300,324,293	3,452,981,276	4,753,305,569	4,753,306,000	△431
자금수입의 총계	11,001,197,369	6,568,411,256	17,569,608,625	17,568,744,000	864,62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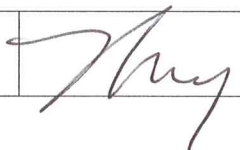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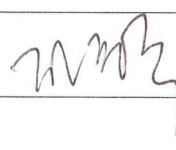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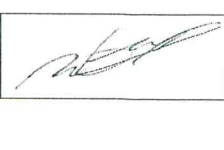
간서명	위원		위원		위원	
-----	----	---	----	--	----	---

다. 지출부

(단위:원)

관별	등록금회계	비등록금회계	교비회계 자금계산서		
			결산액	예산액	증감(△)
보수	4,844,615,596	0	4,844,615,596	5,386,034,000	△541,418,404
관리운영비	1,476,840,067	155,258,517	1,632,098,584	2,667,296,000	△1,035,197,416
연구학생경비	1,468,918,743	2,793,940,244	4,262,858,987	5,026,552,000	△763,693,013
교육외비용	13,237,359	1,743,000	14,980,359	32,000,000	△17,019,641
예비비	0	0	0	16,196,000	△16,196,000
투자외 기타자산 지출	0	200,432,070	200,432,070	248,002,000	△47,569,930
고정자산매입지출	451,602,404	42,451,000	494,053,404	4,095,988,000	△3,601,934,596
미사용차기이월자금	2,745,983,200	3,374,586,425	6,120,569,625	96,676,000	6,023,893,625
자금지출의 총계	11,001,197,369	6,568,411,256	17,569,608,625	17,568,744,000	864,625

- 황금천 위원 : 회의자료에 대학현황으로 교직원 수, 학생 수등의 자료를 요청하다.
- 간 사 : 교직원, 학생 수 현황을 설명하며 추후 회의자료에 포함하기로 답변하다.
- 김한양 부 위원 장 : 우리대학의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2011년 정이사가 선임되어 임시 이사 체제가 종결되었으나 이사회가 양측으로 나누어져 원활하게 운영 되지 못하였으며 대학의 각종 중요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많은 자금이 이월처리 되었음을 설명하다. 또한 이 자금은 잉여금 처리 원칙(안)처럼 학생을 위해 활용할 것임을 부연 설명하다.
- 참석위원 전원 : 각 위원이 관련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관별로 상세히 결산 내용을 검토한 후, 상정 안건에 대해 상호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, 대구사이버대학교 ‘2014학년도 학교비 회계 결산(안)’ 이 타당하다는 의결에 합의하다.
- 위 원 장 : ‘2014학년도 학교비 회계 결산(안)’ 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하다.
- 황금천 위원 : 재청하다.
- 참석위원 전원 : 찬성하다.
- 위 원 장 :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‘2014학년도 학교비 회계 결산(안)’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.

간서명	위원		위원		위원	
-----	----	---	----	--	----	---

< 폐회 선언 >

이상과 같이 회의를 마치고 최계호위원장이 11시 5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사실을 확인 함.

2015년 04월 16일

위 원 장 최계호

부 위 원 장 김한양

위 원 전종국

위 원 이기동

위 원 황금천

위 원 정영수